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 협약

2006. 1. 23

건설교통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 목 차

제 1 조 정 의 1

제 2 조 자금차입 등과 정부의 협조 2

부 록 1 ~ 2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대한민국 정부(“정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자”)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출자자변경 등과 관련하여 2004년 3월 19일 체결한 실시협약(이하“실시협약”이라함)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6년 1월 23일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

## 전 문

제 1 조

정의



(1)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 “자금제조달” 정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자금제조달”이라 함은 실시협약과 비교하여 사업시행의 자본구조, 타인자본조달조건, 출자자 등의 변경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조 자금차입 등과 정부의 협조

(1) 실시협약 제67조 ⑤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공유하기로 하며, 그 이익공유는 한국교통연구원 (KOTI)의 교통량 검증결과를 감안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익공유 비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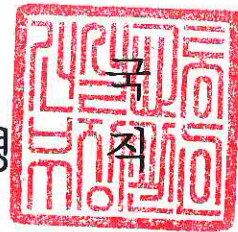
(2) 실시협약 제67조 ⑥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⑥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통행료 인하, 운영수입보장 축소 또는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으로 사용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며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1월 23일

대한민  
건설교통부장관 추 명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번지  
대표이사 박상채

